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 변호사

수신 : FAX/8225229994(박원순 변호사)
발신 : !KR/DACOMHS/CHOLLIAN//J1116
송신 시각 : 94/12/01 14:22
수신 시각 : 94/12/01 14:26
메시지 ID : 0000019916
제 목 : 11.28한일 변호인단 공동선언문

송신자 : J1116 (윤미향)

한 국 정 신 대 문 제 대 책 협 의 회

120-650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빌딩 305호
전화 02) 365-4016, 팩스 02) 365-4017

수신 : PCA한국측 변호인단

제목 : 11월 28일 PCA한.일 변호인단 심포지움 공동선언문 발송

11월 28일 본회와 한.일 변호인단 주최의 토론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의 협조로 말미암아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토론회가 오후 4시까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각 신문과 방송사에서 보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아래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보내드리니 꼭 읽어 보시고 주위분들께도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PCA 한국측변호인단 대 표 유현석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

[1]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로 조직된 정대협 PCA한일 변호인단(1994.11.28. 현재 한국 37명, 일본 68명)은 1994. 11. 28. 서울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일본정부가 "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陸戰법규관례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였고,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개인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일본군'위안부' 개인배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65년 한일협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남가 국가간 조약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설사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교보호권만이며 일본군'위안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별도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되게 한데 따른 '불처벌'의 배상책임을 진다.

5.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일본정부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CA를 통한 중재제소는 일본군'위안부' 개인이 직접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해결방법임을 확인한다.

6. PCA에 의한 해결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금액은 ICJ권고대로 1인당 4만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

7. 일본군'위안부'개인에 대한 피해배상액은 일본군'위안부'로 강요된 생활을 할 당시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해 오므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손해를 모두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2]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우리는 일본과 한국정부 및 국제연합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1)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1993. 8. 24. 2차 보고서를 발표 후 계속적인 진상조사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더이상 진상조사발표도 하지 않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의 총숫자,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등의 명령체계 등 전모에 관한 진상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행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이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왜곡하는 현재의 민간위로금안의 추진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일본정부가 만약 배상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판단을 받기 위해 국제법상 권위있는 기구인 PCA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여야 한다. 그 합의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빨리 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ICJ의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하며, PCA에 의한 해결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1인당 미화 4만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2.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1)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진상조사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며 국내자료를 완전공개하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 한국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PCA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여야 한다.

(4)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일본의 전후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한국정부는 ICJ의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3. 국제연합에 대한 권고

우리들은 국제연합이 ICJ의 권고를 지지해 줄것을 요구한다.